

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181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부서의 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「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」 등 6개의 조례에 대하여 부서 명칭을 일괄 개정함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※ 「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생략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해당없음

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,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, 교육지원과장”을 “혁신기획관, 일자리경제과장, 평생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제1호 중 “경제환경국장, 행복도시사업단장,”을 “일자리경제국장, 명품도시사업단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제1호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혁신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계획과장”로 한다.

제5조(「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하남시 행정서비스현장운영조례」의 개정) 하남시 행정서비스현장은

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종합민원과장”을 “민원여권과장” 하며, 같은 항 “공보감사담당관”을 “청렴감사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혁신기획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혁신기획관 이명훈
	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팀장 홍은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윤라 (790-552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하남시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예산담당관,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</u> , 자치행정과장, 복지정책과장, 여성보육과장, <u>교육지원과장</u> ,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④ · ⑤ · ⑥ · ⑦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혁신기획관, 일자리경제국장</u> , ----- -----, <u>평생교육과장</u> , ----- ④ · ⑤ ·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제2조(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<u>경제환경국장</u> , 안전도시국장, <u>행복도시사업단장</u> , 친환경사업소장이 된다. 2. (생략) ④ (생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----- --, <u>일자리경제국장</u> , ----- <u>명품도시사업단장</u> ,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기금운용심의회) ①·②·③(생략)</p> <p>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시의 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문화체육과장</p> <p>2.(생략)</p> <p>3.(생략)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7조 (기금운용심의회) ①·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혁신기획관, 문화체육과장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
제4조(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·관리 조례)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기획관, 도시과장, 주택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.이때 관련전문가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·⑥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도시계획과장,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·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)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심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과장, 건설과장, <u>교통행정과장</u>, 상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 ~ 5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조 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교통정책과장</u>, ----- ----- -----</p> <p>1 ~ 5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6조(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)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 (시정 및 보상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고객·민원여권과장·관계 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<u>종합민원과장</u>은 고객불편사항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<u>공보감사담당관</u>에게 송부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7조 (시정 및 보상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민원여권과장</u> ----- ----- <u>청렴감사관</u>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